

원주역 우미린 더스카이 | **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**

■ **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방법**

서류제출 기한	2024년 10월 12일(토) ~ 10월 17일(목) 09:00~17:00(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 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)
제출 방법	건본주택 방문 접수
건본주택 위치	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계동 878-1번지(대표번호 : 033-731-0020)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한 내에 아래 자격서류를 발급하시어 건본주택 방문 후,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• 당첨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,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■ **노부모부양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 서류**

구분	서류유형		구비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동 서류	○		신분증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•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(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) / 외국인인은 외국인등록증(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) ※ 2020.12.21.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여권과 함께 제출
	○		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 / 인감증명서(본인 발급용에 한함/대리인 발급 불가)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으로 대체(대리인 위임 불가)
	○	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포함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발급
	○		청약통장순위(가입) 확인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순위(가입)내역 발급 또는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(가입) 확인서 발급(국가유공자, 장애인 제외) ※ 인터넷청약(청약Home)으로 청약한 경우 생략
	○		복무확인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(군복무기간 명시)
해외 근무자 (단신부임)	○		해외체류(단신부임) 관련 입증서류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• 국내기업·기관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 / 해외에서 직접 사업을 하거나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
	○		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(단신부임)	세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•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세대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
노부모 부양 특별공급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피부양 직계존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
	○		주민등록초본(상세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-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3년 이상의 과거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	배우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외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-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 제외 -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직계존속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(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)
	○	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포함)	피부양 직계비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-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1년 이상의 과거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/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- 만30세 미만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- 만30세 이상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-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직계존속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
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 		
부적격 통보를 받은자	○		무주택 소명서류	해당주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'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※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족대장등본 포함), 무허가건물확인서, 철거예정증명서, 소형-저가주택 임을 증명하는 서류(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등),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○		당첨사실 소명서류	해당주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
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	○		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본인 (당첨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/ 인감증명서(본인 발급용에 한함, 대리인 발급 절대 불가)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대리인 위임 불가
	○		위임장	본인 (당첨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 / 견본주택 비치
	○		신분증	대리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•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(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) / 외국인인은 외국인등록증(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) ※ 2020.12.21.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여권과 함께 제출

※ 상기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(2024.09.20(금)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전체)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.
 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 ※ 특별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(검증)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표 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 ※ 상기 서류의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